

대구대학교 ·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상 호 협 력 협 약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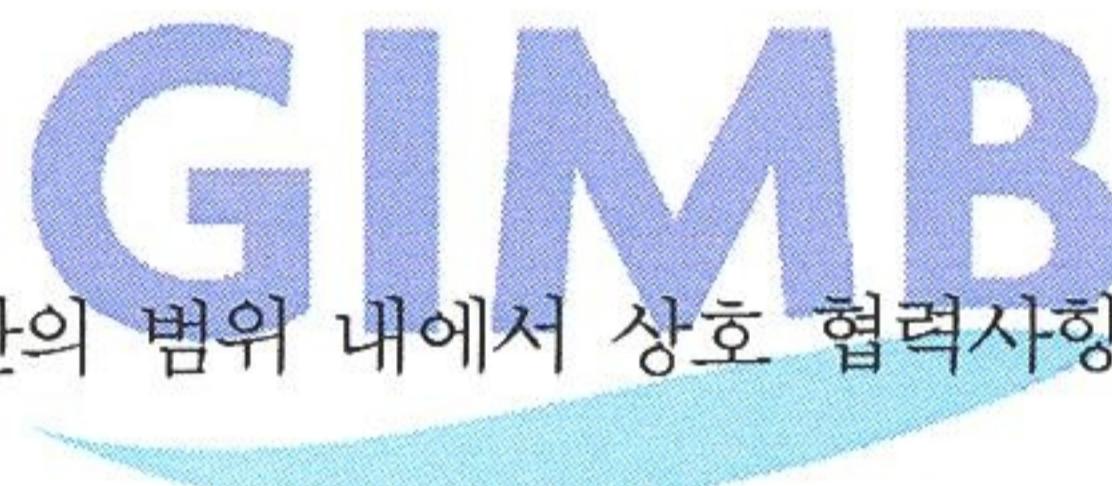
대구대학교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해양생명환경산업에 대한 연구개발(R&D)활동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(이하 “양 기관”)이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, 인력, 정보, 장비와 시설의 상호 교류 및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약의 이행)

- ① “양 기관”은 당해 기관의 제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- ②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

제 3 조 (기본운영원칙)

본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“양 기관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상호 협력교류에 있어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, 상호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 4 조 (협력 분야)

- “양 기관”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- 가. 학술, 기술정보의 교류 및 자문
 - 나.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
 - 다.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상호협력
 - 라.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교류에 관한 협력
 - 마. 기술개발과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
 - 바.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인력의 겸임 교원 위촉 및 활용
 - 사.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 등

제 5 조 (협력 창구)

- ① “양 기관”은 상대기관에 사업 및 기관 홍보를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- ② “양 기관”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 기관을 현지 업무 추진 및 홍보활동을 위한 상대지역의 협력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상대기관은 동 역할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대외 홍보)

“양 기관”은 공동협력 내용 및 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“양 기관”의 공동명의로 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상호 협력)

이 협약서의 해석상,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“양 기관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8 조 (효력 발생 등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하고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8. 2. 27



총장 이 용 두

이 용 두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



원장 김종만

김종만

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-3